

「Hana 1Q bank CMSiNet」 서비스 이용약관

제 1 조(목적)

이 약관은 (주)하나은행(이하 “은행”)과 Hana 1Q bank CMSiNet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하 “고객”)간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따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제 15 조(준용규정 및 약관의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1. “내부시스템”이라 함은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ERP 를 포함한 전산 시스템을 말합니다.
2. “금융회사”라 함은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등 고객이 거래하는 국내외 모든 금융회사를 말합니다.
3. “계좌”라 함은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금, 증권(위탁계좌,MMF,CMA 등), 보유 신용카드 관련 계좌 등을 말합니다.
4. “이용자”라 함은 고객이 이용 권한을 부여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5. “프로그램”이라 함은 고객이 이용하는 금융회사의 금융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고객 내부 시스템과 은행의 금융시스템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등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제반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제 3 조(서비스 범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은행이 필요시 서비스 범위를 축소 및 제한하거나, 확대할 수 있습니다.

1. 은행의 국내외 지점 및 현지법인과 연계된 banking거래를 이용할 수 있는 글로벌 인터넷뱅킹서비스
2. 은행과 국내외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의 잔액과 거래내역 등 금융정보의 통합관리 및 입금, 배분 등 자금거래를 포함하는 글로벌 자금관리서비스
3. 고객이 국내외 관계사의 금융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관계사서비스
4. 고객의 내부시스템과 은행의 금융시스템을 연계하는 금융거래 연계서비스
5. 등록금수납관리서비스, 세무지원서비스, 스마트폰서비스 등 기타 부가서비스

제 4 조(서비스 이용 신청)

- ① 고객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은행 앞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1. 은행의 영업점에 방문하여 은행이 정한 절차와 서식을 이용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2. 은행의 기업인터넷뱅킹에 가입되어 있는 고객은 은행이 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서비스 이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은행이 관계사서비스 등 일부 서비스에 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 고객은 동 서비스의 이용을 위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기로 합니다.

제 5 조(서비스 이용 시간)

- 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은행의 인터넷뱅킹서비스 제공 시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은행의 해외영업점 관련 거래는 해외영업점 정책을 따르기로 합니다.
- ② 제 1 항에 불구하고 다른 금융회사와 관련된 거래(조회,이체 등)가 당해 금융회사 등의 정책 또는 사정에 따라 변경되거나 제한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6 조(서비스 중단)

은행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시스템 장애 및 보수유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기타 은행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 7 조(서비스 해지 및 정지)

- ① 서비스 이용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고객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하여 해지 신청하거나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절차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고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고객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거나 허위내용을 등록한 경우
 2. 고객이 타인의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경우
 3. 기타 고객이 은행이 정한 서비스 신청 또는 이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4. 서비스 이용수수료를 약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 8 조(서비스 이용수수료)

- ① 고객은 서비스 이용신청서 상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수수료를 은행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② 은행은 이용수수료를 변경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고객 앞 서면통지 또는 인터넷 고지에 의하여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변경 시행일부턴 1개월 이내에 서비스의 이용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용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9 조(거래내용의 확인)

고객은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내용을 은행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하기로 하고, 은행은 별도의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습니다.

제 10 조(서비스 프로그램 및 데이터의 관리)

- ① 고객은 은행이 제공한 프로그램 등을 제 3자에게 대여, 위탁 또는 양도하지 못합니다.
- ② 은행은 서비스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하고 유지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은 서비스에 필요한 금융회사의 금융정보, ID 및 은행이 정한 인증서 등의 인증정보를 이용자 PC 등에 등록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관리하여야 하며, 동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면책)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에게 발생한 직간접 또는 잠재적인 손실을 포함한 모든 손해에 대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고객이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단,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은행이 책임을 집니다.
 3. 고객의 착오 또는 오류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의 경우
 4. 다른 금융회사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 정지, 변경으로 인한 거래불능의 경우
 5. 고객의 내부시스템 변경 등으로 서비스 프로그램이 거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6. 고객이 내부시스템 또는 이용자 PC 등에 저장된 금융정보 등 각종 정보를 소홀히 관리하여 외부로 유출되거나 유출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 12 조(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

- ① 고객 또는 은행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 금액은 제 13 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 14 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합니다.
-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제 13 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 14 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의해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 13 조(분쟁 해결절차)

- ①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고객과 은행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② 고객은 발생한 문제 또는 분쟁에 대하여 은행에 문제 또는 분쟁의 발생을 통지하고, 은행과 협의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합니다.
- ③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고객 또는 은행은 제 14 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과 관련하여 발생한 소송은 대한민국 법의 적용을 받으며, 소송에 대한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15 조(준용규정 및 약관의 변경)

- ① 이 약관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은행에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에 따릅니다.
- ③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④ 제 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⑤ 은행이 제 3항 및 제 4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⑥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 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